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51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헌승

이인선 • 고동진 • 최은석

조배숙 • 한지아 • 조은희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자동차등에 인증 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과도하고, 장애인사용자 표지부착 위반에 대한 벌칙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점과 비교해도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

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제1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91조의2(벌칙)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u><</u> 삭 제>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9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4.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		
	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		
	<u>인 자</u>		
<u>1의4.</u> ・ <u>1의5.</u> (생 략)	<u>1의5.</u> ・ <u>1의6.</u> (현행 제1호의4		
	및 제1호의5와 같음)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